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40854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4. 06. 19.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 05. 29

『카츠오우』 정보공개서

(주)카츠오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카츠오우

<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칭함)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유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카츠오우』 가맹본부 (주)카츠오우 정보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64, 2동 1102호		
전화번호	02-3462-6888	팩스번호	0504-064-5197
가맹사업 담당부서	가맹사업팀	담당자 전화번호	02-3462-6888
홈페이지	https://katsuou.com	담당자 이메일	katsuou08@naver.com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별첨

[별첨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별첨 2] 당사가 정한 기기·장비, 집기·비품, 기타소모품 등 필수 공급 품목

[별첨 3] 당사가 정하는 원·부재료 필수 공급 품목

[별첨 4] 당사가 정하는 필수 판매 상품 및 권유 가격 내역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 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가맹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카츠오우	카츠오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64, 2동 1102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4. 07. 08	2024. 07. 08	박성민 이효제	02-3462-6888	0504-064-5197
	법인등록번호	110111 - 8996154	사업자등록번호		560-88-03093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공동 대표이사)	박성민 (주)카츠오우	카츠오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64, 2동 1102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성민, 이효제	02-3462-6888	0504-064-5197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공동 대표이사)	이효제 (주)카츠오우	카츠오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64, 2동 1102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성민, 이효제	02-3462-6888	0504-064-5197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감사)	신수정 (주)카츠오우	카츠오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64, 2동 1102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성민, 이효제	02-3462-6888	0504-064-5197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가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합병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운영권을 인수함	카츠오우 도곡점	카츠오우	2024. 08.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30길 42, 1층	신수정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카츠오우』	카츠오우는 “매화꽃”을 상징합니다. “매화꽃”의 꽃말인 ‘충실’ ‘인내’ ‘맑은 마음’ 세 가지 말처럼 음식과 고객들에게 ‘충실’하고 원재료가 최상의 맛이 올라오기까지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맑은 마음’으로 음식에 임하는 마음가짐. 이렇게 세 가지 조화를 이뤄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상 호	『카츠오우』 _____ 점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 40-1642393 호
	카츠오우	등록번호 : 제 40-1642394 호
광 고	-	-
그 밖의 영업표지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	-	-	-	-	-
2023년	-	-	-	-	-	-
2024년	1,000	0	1,000	0	0	0

※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카츠오우'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과 동일합니다.

(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영업표지	연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매출액	상한	하한
카츠오우	2022년	-	-	-
	2023년	-	-	-
	2024년	0	-	-

※ 당사는 2024년 7월 8일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박성민	공동 대표이사	2020. 11. 09. ~ 2022. 09. 22	토리시오(라멘전문점) 대표	매장업무 총괄
			2024. 07. 08. ~ 현재	(주)카츠오우 공동대표	회사업무 총괄
	이효제	공동 대표이사	2019. 05. 24. ~ 현재	카츠오우 압구정점 대표	매장업무 총괄
			2024. 07. 08. ~ 현재	(주)카츠오우 공동대표	가맹사업 총괄
	신수정	감사	2019. 08. 01 ~ 현재	카츠오우 도곡점 대표	매장업무 총괄
			2024. 07. 08. ~ 현재	(주)카츠오우 감사	경영 관리 업무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3	0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해당 없음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카츠오우』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의 지식재산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 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서비스표) 	제43류	출원 2019.08.13. 등록 2020.09.10.	출원번호 : 제40-2019-0125875호 등록번호 : 제40-1642393호	박성민	2030. 09. 10.
상표(서비스표) 카츠오우	제43류	출원 2019.08.13. 등록 2020.09.10.	출원번호 : 제40-2019-0125890호 등록번호 : 제40-1642394호	박성민	2030. 09. 10.

※ 당사의 지식재산권은 현재 박성민[(주)카츠오우 공동대표] 명의로 되어 있고, 당사는 소유자와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사용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귀하는 계약기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관계기관에 등록된 당사의 특허, 상표, 서비스표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카츠오우』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짜 : 2024. 10. 23.

(직영점 시작일 : 2019. 08. 01.)

※ 상기 직영점 시작일은 당사 이전의 가맹본부가 『카츠오우』를 운영할 당시의 기준입니다.

2. 『카츠오우』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카츠오우 도곡점	카츠오우	신수정	가맹사업 준비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30길 42, 1동(도곡동, 신우빌딩)
(주)카츠오우	카츠오우	박성민 이효제	2024. 10. 23. ~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64, 2동 1102호

3. 『카츠오우』 업종

> 『카츠오우』 업종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카츠오우	일식	돈카츠, 카레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카츠오우』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지역별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0	1	1	0	1	2	2	0
서울	1	0	1	1	0	1	2	2	0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 상기 기재된 2022년, 2023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당사 이전의 가맹본부가 『카츠오우』를 운영할 당시의 기준입니다.

5. 바로 전 3년간 『카츠오우』 가맹점 수

>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사업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2년	-	-	-	-	-	-
2023년	-	-	-	-	-	-
2024년	0	2	0	0	0	2

※ 『카츠오우』는 2024년 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6. 『카츠오우』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해당 없음 : 당사는 『카츠오우』 외에는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의 특수관계인도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 해당 없음 : 직전 사업연도 기준 가맹점 모두 영업개월 수가 6개월 미만인 관계로, 개점 초기 매출로 연간 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단위:개/천원, 부가세미포함)



지역	전년도말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하한		산출 가맹점 수
		총 매출액	면적 ^(3.3m2) 당 매출액	총 매출액	면적 ^(3.3m2) 당 매출액	총 매출액	면적 ^(3.3m2) 당 매출액	
전체	2	해당없음	-	-	-	-	-	6개월미만
서울	2	해당없음	-	-	-	-	-	5곳미만
부산	-	해당없음	-	-	-	-	-	-
대구	-	해당없음	-	-	-	-	-	-
인천	-	해당없음	-	-	-	-	-	-
광주	-	해당없음	-	-	-	-	-	-
대전	-	해당없음	-	-	-	-	-	-
울산	-	해당없음	-	-	-	-	-	-
세종	-	해당없음	-	-	-	-	-	-
경기	-	해당없음	-	-	-	-	-	-
강원	-	해당없음	-	-	-	-	-	-
충북	-	해당없음	-	-	-	-	-	-
충남	-	해당없음	-	-	-	-	-	-
전북	-	해당없음	-	-	-	-	-	-
전남	-	해당없음	-	-	-	-	-	-
경북	-	해당없음	-	-	-	-	-	-
경남	-	해당없음	-	-	-	-	-	-
제주	-	해당없음	-	-	-	-	-	-

※ 『카츠오우』의 2개 가맹점은 각각 2개월 운영으로 매출액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8. 『카츠오우』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일)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년	2	70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 없음 : 당사는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 및 가맹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 해당 없음 : 당사에서 직전 사업연도에 『카츠오우』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1) 가맹금 예치기관

예치기관의 상호	담당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양재중앙지점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삼호물산빌딩	02-589-1900

2) 가맹금 예치절차

> 당사가 정한 예치 기관의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우리은행 계좌가 있는 사업자	은행 직접 방문 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개인상품부)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 받아 보관
	인터넷 뱅킹 이용 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인터넷뱅킹(www.wooribank.com) 접속 → ③ (기업서비스)클릭 → ④ (가맹금예치제도)클릭 → ⑤ (가맹점사업자)클릭 → ⑥ (가맹금예치금 예치)클릭 → ⑦ 약관 내용 확인 후 약관에 동의 → ⑧ [가맹본부 사업자번호] 입력 후 (가맹본부 조회)클릭 → ⑨ (가맹본부 상호)클릭 후 가맹금 예치금액,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가맹계약체결일 입력 → ⑩ (가맹금예치)클릭 후 종료 → ⑪ 다시 인터넷뱅킹을 로그인 후 (가맹금예치제도)클릭 → ⑫ (예치내역조회/승인)클릭 후 승인 → ⑬ 가맹금예치 완료
우리은행 계좌가 없는 사업자		우리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실행
계좌 개설시 필요서류	본인이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대리인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④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귀하는 또한 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 > 해당없음 : 향후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치기관으로 가맹점사업자피해 보상보험 기관을 정할 수 있으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귀하에게 증권을 제출하고 당사가 정하는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를 받은 사실

-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카츠오우』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별도구입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지정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 : 개시지급금, 예탁금, 할부금의 첫 지불액, 선금임차료, 설비구입대금 등 명칭이 어떻든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 또는 계속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의 내역

>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합계	8,800				<예외 조건>
가맹비	3,300	최초 계약 체결과 동시에 예치	반환 안됨	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	귀책사유 없는 해지 시 정산 후 반환
개점 전 교육비	5,500	최초 계약 체결과 동시에 예치	반환 안됨	개점 전 교육비로 비용소요	개점 전 교육 미 진행시 반환

※ 가맹비 대가 내역 : 당사가 보유하는 영업표지 사용 허락(20%), 가맹점 운영권의 권리 부여(10%), 영업지역 부여(10%), 입지 선정 시 조언(20%), 개점 시 운영 및 노하우 제공 (20%), 개점 시 영업활동 지원(20%)

※※ 귀하는 가맹점 영업이 개시된 이후 및 귀하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가맹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보증금, 담보목적물 등 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대가**

- >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당사에서 수령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반환 조건
합계	5,000			
계약이행 보증금	5,0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가맹본부의 물품 및 로열티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	계약 종료 시 정산 후 반환

※ 계약이행보증금 수령 조건

- > 당사가 제공하는 물품 대금 및 파손, 로열티, 광고·판촉 부담금, 교육·훈련비 등의 미납액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 담보

※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조건

- > 계약의 기간 만료 및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영업표지 철거 완료 후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 및 손해배상액 정산 후 잔액 상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금액	비고
합계	13,800	
가맹비	3,300	부가세포함
개점 전 교육비	5,500	부가세포함
계약이행보증금	5,000	부가세없음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치기관으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기관을 정할 수 있으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귀하에게 증권을 제출하고 당사가 정하는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비용 : 필수설비, 정착물, 인테리어 비용,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 정해진 기간을 넘길 때 추가로 생기는 금융비용 등

- >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비고
		면적 66m ² 당 (구. 약 20평)	면적 3.3m ² 당 (구. 약 1평)		
합계		88,863	4,443		
인테리어 설비	협력업체	44,000	2,200	시공계약일 50% 시공완료일 50%	도면설계비 별도 관리감독비 별도
간판 등 설비	협력업체(미정)	2,200	110	시공계약일 50% 시공완료일 50%	도면설계비 별도 관리감독비 별도
의·탁자	협력업체	5,104	-	물품 주문 시	-
기기·장비	협력업체	17,278	-	물품 주문 시	[별첨 2] 참조
집기·비품	협력업체	6,831	-	물품 주문 시	[별첨 2] 참조
기타 소모품	협력업체	1,100	-	물품 주문 시	[별첨 2] 참조
POS 기기 및 운영프로그램	협력업체	1,350	-	물품 주문 시	[별첨 2] 참조
초도물품	협력업체외	11,000	-	물품 주문 시	[별첨 3] 참조

※ 위의 모든 비용은 시공 및 구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 또는 귀하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매장의 크기, 구조, 점주 선택사항,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 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공내역 및 지급대상은 가맹본부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비용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인테리어, 간판 등 직접 시공 시 도면설계 및 관리감독비 부담

> 귀하는 인테리어, 간판 등 설비 시공하는 경우,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 전체의 동일성과 독창성 유지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간판 등의 설비는 당사가 정한 시공매뉴얼을 준수하여 설계·시공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당사가 정한 시공매뉴얼에 따라 직접 시공하거나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 의뢰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당사의 노하우가 담긴 시공매뉴얼 보호를 위하여 도면설계는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 또한, 당사는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귀하는 **도면설계 및 관리감독 비용으로 건당 금 삼백삼십만원 (₩3,300,000)<부가세 포함>**을 시공 시작 전일까지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은 귀하의 점포 소재지가 속한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귀하가 인테리어 및 간판 등을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서 시공하는 경우, 도면설계 및 관리감독 비용은 면제됩니다.

>>>>> 시공 시 철거, 전기 이설 및 증설, 소방, 냉난방, 외부테라스, 외부덕트, 외부어닝, 창고신설, 배관설비, 화장실 신설 및 교체, LED 간판 등은 매장 상황 및 귀하의 선택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시공계약 체결 시 기본공사와 별도공사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필수 품목 구입 기준

> 기기·장비, 집기·비품, 기타 소모품, 초도물품 등 가맹점 운영을 위해 필요한 물품은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 당사가 정한 사양에 따라 귀하가 직접 구입하거나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당사가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필수로 지정하는 기기·장비, 집기·비품, 기타 소모품 및 초도물품 등 품목은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서 구입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지정하는 필수 품목의 **자세한 내역은 [별첨 2] 및 [별첨 3]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당사가 필수로 지정하는 품목 외의 물품을 귀하가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귀하는 구입품목에 대해 당사의 품질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당사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귀하의 비용으로 재구입하여야 합니다.

(3) POS 기기 및 관리프로그램 구입 기준

> 당사가 전국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필수로 정한 관리프로그램은 반드시 당사 또는 당사가 정한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POS 기기는 귀하가 직접 구입하거나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 당사가 가맹점 운영을 위해 필요하지만 개설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자율로 규정하여 안내하고 있는 물품은 귀하가 직접 구입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구입처 소개를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협력업체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그 밖의 점포 임대차에 소요되는 비용, 영업신고 및 허가증 발급,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화 및 인터넷 개설, TV 설치에 따른 부대비용 등은 귀하가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당사 조언 요청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자 배정→가맹희망자 선정 사업장 방문→입지 및 상권분석→분석 및 결과 타당성 유무 통지→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요청이 없는 경우	가맹희망자 입지 도출→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입지 선정에 따른 최종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권리의 하자 등을 이유로 당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인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신규교육을 이수한자 당사의 필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미성년자가 아닐 것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자
종업원	건강검진을 필한 자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의 필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당사의 직원관리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설비, 기기·장비, 집기·비품 등은 귀하가 직접 구입하거나 당사에 의뢰하여 업체를 소개받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타 소모품, 일부 초도물품 등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해 당사가 필수로 지정하는 품목은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당사가 지정하는 품목의 **자세한 내역은 [별첨 2] 및 [별첨 3]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당사가 공급하는 물품은 가맹계약 체결 후 별도로 협의하고, 당사의 지정업체에서 공급하는 물품은 공급업체 선정 후 지정업체와 별도 협의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당사는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기기·장비, 집기·비품 등의 모델 및 규격, 사양 등을 추가로 정할 수 있고, 이의 경우 귀하는 당사가 제시한 동일한 기기·장비, 집기·비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당사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최초 가맹금 납부 방법

>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일시불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 귀하는营业을 시작한 후에도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 (로열티)	가맹본부	총 매출액의 3.3%	익월 5일	후불제로 반환 안됨	관리비로 비용소요	1일~말일 기준 후납
광고·판촉료	가맹본부	광고·판촉 범위에 따라 협의된 부담비율 중 귀하 부담금	분담금 명세서 수령 후 7일 이내	광고·판촉 행사 진행 후 반환 안됨	광고·판촉 행사진행 비용소요	행사별 부담 기준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교육 실비	추후 공지	교육 후 반환 안됨	교육비로 비용소요	강사비, 재료비, 식대, 교통비 등
영업표지 변경, 리모델링 등 점포환경개선에 따른 변경 비용	지정업체	특별한 사유 발생 시 협의 부담	시공 시작 전일까지	시공 후 반환 안됨	시공비로 비용소요	<분담기준> 가맹본부:20%~40% 가맹점주:80%~60%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귀하의 귀책사유 발생 시 비용 산정	시공 시작 전일까지	시공 후 반환 안됨	교체·보수 비용소요	귀하의 귀책사유 외에는 교체보수를 요구하지 않음
POS 프로그램 사용료	위더스코	매월 11,000	업체지정일	후불제로 반환 안됨	사용료로 비용소요	운영 프로그램 사용 필수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5%	약정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로 반환 안됨	지연이자 비용정산	해당 지급 항목의 약정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로열티 대가 내역 : 당사가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영업표지 사용권, 기타 당사가 소유한 등록 권리 사용권, 신메뉴 개발 및 당사의 노하우 제공, 경영지도 등에 대한 대가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 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

구분(기준: 2024년)	내 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 해당 없음 : 당사는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지 않아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항목	내 용	시 기	비 고
재고관리	실제 재고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별 1회	
회계처리	가맹점 매출액 현황 보고	월 1회	매월 말일 기준 익월 5일 보고

※ 귀하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물품 및 판매에 관한 영업장부, POS, ERP 시스템, 회계장부 등 입·출고 및 매출현황 등을 품목별 및 일자별로 성실하게 기록·유지·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가 파견한 직원의 매장 내 출입을 허용하여야 하며,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하는 가맹사업법 상 의무가 있고,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정보는 귀하가 매출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당사도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허위·과장된 정보가 없는 매출현황 기록·유지·보고 업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귀하의 매출현황 보고의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귀하가 사용하는 카드단말기 VAN사에 당사가 귀하의 매출자료를 직접 요청하고, VAN사가 당사에 매출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귀하가 동의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해당 없음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양수한 가맹본부와 계약을 유지하거나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일부 가맹금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환하는 가맹금은 영업표지 사용료, 영업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금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미 경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당사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귀하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귀하가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는 이를 배상합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반환하는 가맹금은 영업표지 사용료, 영업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금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미 경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 ※ 위의 조건은 귀하가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 양도과정의 부담

- > 귀하가 운영하는 『카츠오우』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을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귀하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승인을 얻은 양수인은 1개월 이내에 당사와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에 따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양수인의 부담으로 개점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은 양도양수를 위해 당사에 초래된 행정적 비용 및 가맹점 운영을 위한 개점 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인이 부담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정산하여 30일 이내에 상환합니다.
- ※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당사에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의 경우 양수인은 당해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그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 귀하는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가맹점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당사의 영업표지 등 당사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계약 종료 후 7일 이내에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합니다. 철거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귀하는 당사의 시스템이 반영된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광고물, 고객들의 신상명세를 비롯한 신용정보, 114 전화번호 등록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기타 홍보사이트, 각종 배달 어플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계약 종료 후 7일 이내에 반환 또는 당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합니다.
- >>> 귀하는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서 공급된 물품 중 유통기간 이내,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물품 등의 완전물에 한하여 당사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당사는 공급가격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반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 귀하가 위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의 영업표지 등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위약금으로 **위반일 1일당 금 일십만원(W100,000)<부가세없음>**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는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 철거 완료 후 추가금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또한, 고객들의 혼란 및 당사의 이미지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계약의 종료 후 1년간 계약상의 동일한 점포소재지에서 돈카츠와 카레를 주 메뉴로 판매하거나, 당사의 브랜드 사용 및 브랜드를 유사하게 변형하여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 당사의 영업비밀 및 노하우 등 당사의 중요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연히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 당사를 비방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당사의 명성이나 명예·신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의 사유로 당사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손해가 있는 경우 당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카츠오우』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 표의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위 (1)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에 기재된 주요 품목 중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서 구매한 대금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를 기재하며, 자세한 내역은 [별첨 2] 및 [별첨 3]과 같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해당 없음 : 귀하가 『카츠오우』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	-	-	-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가맹본부의 경제적 이익

- > 해당 없음 : 당사는 『카츠오우』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 해당 없음 : 당사가 『카츠오우』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 귀하는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아래>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판매상품명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품목만 판매하여야 함	1회 위반 : 구두 경고조치 2회 위반 : 서면 시정조치 3회 위반 : 서면 시정조치 4회 위반 :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당사가 지정하는 품목은 신상품 개발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귀하가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 이외의 품목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에 대하여 고객(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한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상품·용역 또는 당사가 공급하는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 및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 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제한된 거래상대방에게 무상지원 공급 및 판매 금지	1회 위반 : 서면 시정조치 2회 위반 : 서면 시정조치 3회 위반 :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귀하에게 공문을 통해 통지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 귀하는 당사가 제시한 권유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권유가격은 당사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가격이며, 주요 상품 및 가격의 자세한 내역은 **[별첨 4]**와 같습니다.

- ※ 귀하가 **[별첨 4]**에 기재된 권유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당사에 문서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 >>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돈카츠와 카레를 주 메뉴로 판매하는 업종	카츠오우	해당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행정동 기준 1점포	가맹계약서 [별첨 2] 지도에 표기

※ 귀하의 영업지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구역, 세대수, 거주 인구수, 유동 인구수, 가맹점 간 거리, 지역 상권의 특성, 주요 근린시설,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사와 귀하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상호협의 하에 기준을 달리하여 지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별첨 2]에 표기된 지도가 우선적 효력을 가집니다.

※※ 또한, 백화점, 쇼핑몰, 할인점, 마트, 공항, 호텔, 시장, 영화관, 지하상가, 지하철 내, 지하철 및 철도와 연결되어 있는 역사, 휴게소, 관광지 등 집합매장 내 가맹점은 특수상권으로 분류되어 독립된 영업지역으로 구분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재조정 사유 발생→당사 담당팀 검토→영업지역 변경(안) 작성→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영업지역 변경 완료 (→가맹점사업자 미동의→영업지역 변경 불가)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 통지→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가맹점사업자 동의 시 15일 이내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규 점포 입점 불가)

※ 영업지역을 재조정하기 위해 귀하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영업노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귀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당사는 귀하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당사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해당 없음 : 현재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인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귀하의 영업지역 내의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해당 없음 : 현재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인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귀하는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가맹점 위치 및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귀하가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변경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귀하에게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귀하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고 있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년	100	-	-	-



※ 당사는 가맹점을 제외하고 기타 오프라인(직영점), 자사 온라인몰 및 기타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 관련 매출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년	100	-

※ 당사는 2024년 말 기준 오프라인(가맹점)에서만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온라인 전용 상품은 별도로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카츠오우』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2]년**이고, 재계약은 갱신일로부터 **만 [1]년**씩 갱신합니다.

※ 참고로, 귀하가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당사는 당해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기준으로 새로운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호 협의 하에 특별약정의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기존 계약내용에서 변경되는 조건이 없는 경우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귀하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당사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당사가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귀하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당사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귀하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가맹사업법」 상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 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정당한 계약 갱신 거절 사유
1. 가맹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합의해지, 일반해지, 즉시해지 등 3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해지**

> 귀하와 당사는 각각 본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문서에 의하여 합의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해지가 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 귀하 또는 당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 귀하 또는 당사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해지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일반해지 사유
1.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33조(물품공급의 중단)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귀하가 가맹비, 계약이행보증금, 개점 전 교육비, 시공 관리·감독비 및 도면설계비 등 당사와 약정한 개점 전 각종 가맹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귀하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4. 귀하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을 하지 않는 경우
5. 귀하가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당사가 귀하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본부를 양도하는 경우
7. 당사가 귀하에게 물품공급 및 경영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는 경우
8. 당사 또는 귀하가 신의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당사가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사유는 두 가지 경우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일 전 서면 예고 후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1주일 전 서면 예고 후 물품공급 중단하는 사유 - 1
1.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6 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8 조(가맹점운영권의 부여)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훼손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 또는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
3.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12 조(영업지역 부여 및 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의 위치 및 영업지역을 변경한 경우



1주일 전 서면 예고 후 물품공급 중단하는 사유 - 2	
4.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13 조(점포설비의 시공 및 유지관리 등) 규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16 조(계속가맹금) 규정을 위반하여 로열티 등 가맹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6.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17 조(계약이행보증금)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보증금을 부담하지 않거나 물품 및 각종 채무액이 계약이행보증금 및 물품이행보증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7.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19 조(교육 및 훈련)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8.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20 조(경영지도)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각종 경영지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21 조(관리·감독 및 통제)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관리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24 조(영업표준화 및 상품판매 가격) 규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11.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25 조(고객 불만사항의 처리) 규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26 조(광고) 규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27 조(판촉활동 및 각종 제휴카드의 취급) 규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29 조(구입강제품목의 지정) 규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29 조의 1(식자재 및 원·부재료 등의 조달과 관리) 규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30 조(식자재 및 원·부재료 등의 직접조달) 규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31 조(원·부재료 등의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각종 통지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32 조(대금의 결제) 규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38 조(영업양도), 제 39 조(영업의 상속), 제 40 조(대리행사) 규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20.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44 조(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 규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21.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50 조(특약사항) 규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2.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준하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즉시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경우는 즉시해지 사유와 같습니다.

(3) 즉시해지



-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해지 사유
1.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요구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당사 또는 귀하가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6. 귀하가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 ^(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7.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조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귀하와 상호 합의하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의 효력 발생 후 양 당사자 간의 상호합의 하에 기명날인 있는 서면으로 추가 작성된 문서는 본 계약의 추가 부분으로써 그 효력의 발생을 인정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 상속에 필요한 절차

-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가능시 필요한 절차
환매	불가능	-	환매제도 운영 안함
양도	승인 후 가능	가맹점운영권 등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시 양도인과 합의해지 및 가맹금 정산 후 반환→승인시 양수인과 가맹본부 양수도 계약 또는 신규 가맹계약 체결→양도양수시 행정비용 및 개점을 위한 교육비 또는 신규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금 부담→개점을 위한 교육 이수→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상속	승인 후 가능 단, 상속은 직계 존비속에 한함	가맹점운영권 등 모든 권리 의무	상속인(직계 존비속에 한함)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계 의사 통지→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시 상속인과 가맹본부와 잔여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가맹비 면제, 단, 개점을 위한 교육비 부담→교육 이수→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 단, 양도 및 양수에 관련된 부동산 및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의 범위는 직계 존비속에 한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됩니다.

2) 가맹점운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지와 그에 필요한 조건

> 당사는 귀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가맹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의 승인 후 점장 등을 고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으나, 위탁경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대리경영	승인 후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 · 의무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대리경영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대리인 개점 전 교육 이수→대리 경영
위탁경영	불가능	-	위탁경영 인정하지 않음

※ 당사가 승인하는 대리인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개점 전 교육비는 귀하 또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업 중 당사가 필수로 정하는 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 당사는 계약기간 존속 중에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명의로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계약기간 존속 중 경업을 하기 위해서는 1개월 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돈카츠와 카레를 주 메뉴로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승인 요청→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허가 여부 통지→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 당사는 『카츠오우』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권유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유 영업시간	권유 영업일수	비고
11:00 ~ 21:00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7일 이상 휴업불가

-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

권장 종업원수	점주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4명 이상 (주방 2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교육받은 종업원

-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의 종업원 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는 귀하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방문 및 유·무선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당사가 정한 상품 등의 취급 여부, 원부재료 품질기준 준수 여부, 매장 위생 및 청결 상태, 각종 설비 및 기기 관리 상태, 기타 가맹점 매뉴얼 규정 준수 여부, 매출 현황 등 가맹점 운영 현황 전체	담당자 매장 방문 →관리감독내역 점검 →관리표 작성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방문 및 유·무선 등을 통하여 월 1회 이상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총 광고비의 50%	총 광고비의 50%	광고기획 → 가맹점사업자 50% 이상 동의 또는 광고 진행에 관한 약정 체결 → 가맹점사업자 부담분 산정, 분담금통지서 발송 → 수령 후 7일 이내 완납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부담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총 광고비의 75%	총 광고비의 25%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판촉 전체 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기획 → 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 또는 판촉행사 진행에 관한 약정 체결 → 가맹점사업자 부담분 산정, 분담금통지서 발송 → 수령 후 7일 이내 완납	각 가맹점별 부담금액 상이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경품·기념품·카다로그 등 제공 판촉행사	행사 기획에 소요되는 총 비용	경품·기념품·카다로그 등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행사기획 → 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 또는 판촉행사 진행에 관한 약정 체결 → 가맹점사업자 부담액 산정, 통지서 발송 → 수령 후 7일 이내 완납	각 가맹점별 제작요청 수에 따라 비용 상이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	-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등	제휴행사	기획비용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을 균등부담	제휴서비스 기획 → 가맹점 사업자 70% 이상 동의 또는 판촉행사 진행에 관한 약정 체결 → 가맹점사업자 부담분 산정, 분담금통지서 발송 → 수령 후 7일 이내 지급	할인서비스 등의 종료 시 까지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 >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개별적인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광고 및 판촉의 계획과 문안, 기타 광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광고시행일 15일전까지 당사에 서면으로 광고시행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일부의 광고 및 판촉 비용을 부담한 경우 집행내역 통보 내용

- > 당사는 사업연도 중 귀하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 및 판촉행사를 시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귀하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 통보 내용	
1. 해당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 및 판촉행사	(해당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 별 명칭, 내용 및 실시 기간
2. 해당사업연도에 광고 및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해당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 및 판촉행사로 집행한 비용 및 귀하가 부담한 총액	

- ※ 귀하가 세부 산출근거가 포함된 광고매체별 광고 횟수·단가 또는 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열람의 일시, 장소를 정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 당사가 정하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귀하는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후에도 당사의 계약 내용과 시스템, 운영매뉴얼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본 계약 브랜드와 동일한 업종을 창업 또는 지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2) 귀하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당사의 영업상 비밀이나 노하우를 본 계약기간 동안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3) 귀하는 당사가 제공하는 표준 인테리어매뉴얼, 가맹점운영매뉴얼,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교육훈련 자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를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 당사가 정하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및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당사 또는 당사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귀하가 당사의 **영업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당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를 위반 사유로 산정하는 손해배상 예정액은 **귀하가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얻거나 경업을 통해 얻은 매출액 전체로** 산정합니다.
- 4) 당사가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필수로 지정하는 기기·장비, 집기·비품, 기타 소모품 및 초도물품 등의 품목을 **자점매입 또는 다른 곳에 유통하거나, 상품(메뉴)으로 판매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금으로 금 일천만원(₩10,000,000)<부가세없음>**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5) 귀하가 계약종료 후 원상회복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의 영업표지 등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위약금으로 **위반일 1일당 금 일십만원(₩100,000)<부가세없음>**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6) 당사 또는 귀하 중 어느 일방이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영업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 비용을** 지급하고 할인 또는 면제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예치 가맹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위약별로 지급하기로 합니다.
- 7) 당사와 귀하가 합의로 해지하거나, 귀하가 당사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당사의 승인 없이 가맹점 및 가맹사업운영권을 임의로 명의변경 하거나 양도양수 하는 등 **여타의 사유를 불문하고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귀하는 개점 시 당사가 가맹비, 개점 전 교육비, 설비 및 구입품목 등을 할인하거나 지원한 경우 모두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지일 직전 6개월 기간 동안의 로열티, 광고분담금, 당사와 당사의 지정업체가 공급한 요구(강제)품목 매출액 등을 모두 합한 금액) ÷ 6 × 계약기간 잔여개월 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을 위한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실제 가맹점이营业을 개시할 때 까지 필요한 절차 및 기간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66㎡(약 20평) 기준 당사 전체 시공 시	약 [44]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 담당자 배정	D-44(1일)	
사업설명 · 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가맹점현황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D-43(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D-28~42(15일)	
최종 협의	- 임대차 계약 체결	D-27(1일)	
가맹계약 체결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D-26(1일)	
점포 실측 / 설계	- 인테리어 등 시공 비용 산출 - 간판 등 시공 비용 산출 - 각종 기기·장비 비용 산출 - 각종 집기·비품 비용 산출 - 시공 계약 체결	D-24~25(2일)	
각종 공사	- 인테리어 시공 - 간판 시공 - 의탁자 주문 및 입고 - 기기·장비 주문 및 입고 - 집기·비품 주문 및 입고 - 기타 소모품 주문 및 입고 - 교육 실시 및 공사기간 중 완료 - 각종 인허가 취득	D-4~23(20일)	
개점준비마무리	- 공사 완료 - POS 및 음향 설치 - 초도 물품 입고 - 기타 각종 물품 입고	D-1~3(3일)	
개점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 개점이벤트 실시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매장의 규모 및 공사 일정, 인허가 일정 등으로 인해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와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계약 체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 2) 전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전항의 규정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당사 또는 귀하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가맹본부의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종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가맹본부가 지원하는 내역

>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지원 조건	지원 기간	지원 금액	비고
개점 시 영업활동 인력지원	개점 시 매장 운영 지원을 위한 직원 1명 인력 파견	계약기간준수 영업방침준수 계약내용준수	개점 전일부터 2~3일	-	지원조건 위반 시 즉시 청구

3. 경영활동 자문

- > 당사는 귀하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귀하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귀하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요원 등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설명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 > 해당 없음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 해당 없음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제도를 운용하지 않아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카츠오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필수여부
개점 전 교육	1일차	회사 소개, 프랜차이즈의 이해, 메뉴 및 물류 설명, 마케팅 교육 등 이론 교육	이론 교육	개점 전일	필수
	2일차 ~ 6일차	조리 매뉴얼의 이해 및 조리 실습 교육	이론 및 실습교육		
	7일차 ~ 9일차	POS 사용 및 고객응대 등 홀 운영 실습 교육	이론 및 실습교육		
	10일차 ~ 21일차	현장 실습 (홀/주방)	실습교육		
	22일차	가 오픈 운영을 통한 실습 교육 및 매장 운영 Test	실습교육 및 Test		
보수 교육	개점 전 교육 이수 후 테스트 미 통과 시		실습교육	Test 통과할 때까지	필수
특별 교육	신메뉴 출시 및 조리매뉴얼 변경 등 각종 매뉴얼 변경, 매장 운영 개선 등 기타 교육이 필요한 경우 등		이론 및 실습교육	추후 공지	필수

※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인원은 가맹점사업자 포함 2인이거나, 매장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인원이 추가되는 경우 협의하여야 합니다. 인원이 추가되거나 교육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비용은 귀하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1인당 추가금액 금 오십오만원(₩550,000)<부가세포함>, 1일당 추가금액 금 이십이만원(₩220,000)<부가세포함>**이 발생합니다.

※※ 귀하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 하거나, 교육 수료 후 당사가 정한 기준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개점할 수 없으며, 테스트에 통과할 때까지 추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훈련 내용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카츠오우』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교육인원	비고
개점 전 교육	22일(110시간)	5,500	가맹점사업자 포함 2인	계약체결시 예치
보수 교육	Test 통과 할 때까지	1일당 220	가맹점사업자 포함 2인	
특별 교육	추후 공지	교육실비	추후 공지	교통비, 식비, 숙박비, 재료비, 강사비 등

※ 개점 전 교육 이수정도가 미흡하거나 참여 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교육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개점 전 교육 및 특별교육 시 인원이 추가되거나 교육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강사비, 재료비, 교통비, 식대 등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육시간 및 비용은 귀하와 추후 협의 및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교육 · 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 3일 전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 · 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귀하 또는 점포의 관리자는 개점 전 교육 및 당사가 실시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 승인이 거부되거나 보류될 수 있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실시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갱신 거절, 물품공급중단, 가맹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운영중인 직영점이 없습니다.

다만 <카츠오우 압구정점>의 경우 現 (주)카츠오우 공동 대표이사 이효제, <카츠오우 도곡점>의 경우 現 (주)카츠오우 감사 신수정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매장을 법인설립 후 2024년 10월 23일 가맹점으로 전환하였으며, 현재에도 (주)카츠오우 공동 대표이사 이효제, 감사 신수정이 각 매장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NO	지역	명칭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산정기준

(단위: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별첨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당사가 정한 기기·장비, 집기·비품, 기타소모품 등 필수 공급 품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3] 당사가 정한 원·부재료 필수 공급 품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4] 당사가 정하는 필수 판매 상품 및 권장가격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제공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법」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다만,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